

LINC+사업단 운영규정

(제정 2014. 5. 1.)
(제명변경 2017. 7. 1.)
(전부개정 2018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운영규정(교육부 훈령 제209호(2017.3.17))」 및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90조에 따라 전주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에 설치되는 LINC+사업단(이하 ‘사업단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구축 및 지원
2. 산학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운영
3.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
5. 그 밖에 LINC+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 및 기능) 사업단에 4IR교육혁신센터, 창의인력양성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기업지원센터, 사회적경제협업센터, 창업교육센터, LINC+혁신선도대학사업단, LINC+사업팀을 둔다.

제5조(단장 등) 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에는 단장, 부단장, 센터장을 둔다.

② 단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③ 부단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인력) ① 사업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LINC+사업팀장 및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④ 센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,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1절 LINC+위원회

제7조(설치 및 구성) ①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LINC+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LINC+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LINC+사업단장, 인문대학장, 사회과학대학장, 경영대학장, 의과대학장, 공과대학장, 문화융합대학장, 문화관광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⑤ 그 밖의 위원은 LINC+사업단장이 추천하되, 4분의 1 이상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LINC+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LINC+사업의 계획·조정
2. LINC+사업 관련 대학의 행·재정 지원 방향 및 대책 수립
3. LINC+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산학협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
4. 사업단 관련 규정의 개·폐
5.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절 4차 산업혁명 선도교육 혁신위원회

제10조(설치 및 구성) 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선도교육 혁신체계 구축 및 산학협력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교육 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10.30.>

③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LINC+사업단장이 되며,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학생취업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공과대학장, LINC+혁신선도대학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개정 2018.10.30.>

⑤ 그 밖의 위원은 LINC+사업단장이 추천하되, 4분의 1 이상은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LINC+사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4IR 선도교육 혁신체계 구축 계획·조정
2. 4IR 행·재정 지원 방향 및 대책 수립
3. 4IR 교육과정(기초교과, 전문교과), 교육방법, 교육환경 혁신 방안 도출
4. 그 밖에 4IR 선도교육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3절 자체평가위원회

제13조(설치) 사업단의 업무추진과정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결과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단 업무에 관한 실적 및 성과 평가
2. 세부업무 추진 및 집행 과정과 절차의 적절성 평가
3. 예산 집행의 적절성 평가
4. 그 밖에 사업단 관련 사항 평가

제1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LINC+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의 과반수는 산업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하며,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회의) ① 회의는 매년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7조(재정) 사업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LINC+사업 관련 산학협력 계약 수입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
3. 사업단이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료

4. 그 밖에 LINC+사업에 의한 수입금

제18조(회계처리) LINC+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은 사업단에 편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